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12.12.(수)

책 임 자		담 당 자	
	금융위 회계감독팀장 김 선 문 (02-2100-2684)		차영호 사무관 (02-2100-2683)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이 기 영 (02-3145-7290)		김대범 팀장 (02-3145-7302)

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□ **증권선물위원회**는 2018. 12. 12일 제22차 회의에서,

○ **회계처리기준**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**참엔지니어링㈜** 등 2개사에 대하여, **과징금 부과,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** 등의 조치를,

○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**회계감사기준**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**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**를 의결하였음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18.12.12. 의결)

(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 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참엔지니어링㈜ 결산기 : 2009.12.31. 2010.12.31. 2011.12.31. 2012.12.31. 2013.12.31. 2014.12.31.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 종 :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 조 업	**【회사】** ①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계상 ('10년 9,043백만원, '11년 10,921백만원, '12년 7,849백만원, '13년 7,441백만원) -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하면서, 장기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, 이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,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함 ② 선급금 등 과대계상 ('09년 2,160백만원, '10년 2,939백만원, '11년 5,730백만원, '12년 4,648백만원, '13년 2,071백만원, '14년 4,223백만원) -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하면서, 전 대표이사가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선급금 및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함 ③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('09년 5,685백만원, '10년 16,515백만원, '11년 15,344백만원, '12년 15,556백만원, '13년 22,951백만원, '14년 12,546백만원) - 회사는 대표이사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과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④ 수익인식 오류 등 ('09년 5,667백만원, '10년 9,641백만원, '11년 15,888백만원, '12년 11,818백만원, '13년 9,199백만원, '14년 26,582백만원) - 회사는 설치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수익인식 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제품 인도시 수익과 관련 비용을 인식하였고, 일부 수수료 비용을 수익인식시 함께 인식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함 ⑤ 종속기업 관련 회계처리 위반 ('13년 1,391백만원 '14년 11,237백만원) - 회사는 최대주주와 임원이 자회사에서 차명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횡령하였음에도, 대출금의 실재성과 회수가능가액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대계상 하였으며, - 손자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형자산(건설중인자산)을 누락하여 연결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	**회 사 :** - 과징금 60백만원 - 감사인지정 3년 (2019.1.1.~2021.12.31.) - 검찰 고발 (회사 및 前대표이사 1인, 前 담당임원 1인) - 검찰통보(前 담당임원 2인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참엔지니어링㈜	【감사인】 ① 매도가능증권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0년 9,043백만원, '11년 10,921백만원, '12년 7,849백만원, '13년 7,441백만원) - 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 취득시 평가보고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, 이후 손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손상을 일부만 인식한 회계처리를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선급금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09년 2,160백만원, '10년 2,700백만원, '11년 4,480백만원, '12년 3,402백만원, '13년 34백만원, '14년 110백만원) - 감사인은 회사 선급금 원장 및 관련 매출내역 검토 등을 통해 선급금을 이용한 횡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③ 수익인식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09년 5,667백만원, '10년 9,641백만원, '11년 15,888백만원, '12년 11,818백만원, '13년 9,199백만원, '14년 26,582백만원) - 감사인은 설치조건부 판매의 수익인식 시점 및 수익관련 수수료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④ 종속기업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4년 3,907백만원) - 감사인은 손자회사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시 건설중인자산을 누락하고 분석적검토 등 그룹 감사절차 또한 소홀히 수행하여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**대명회계법인 :**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% - 참엔지니어링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**공인회계사 : 1인** - 참엔지니어링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2시간 **공인회계사 : 2인** - 참엔지니어링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8시간 **공인회계사 : 2인** - 참엔지니어링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 **공인회계사 : 2인** - 참엔지니어링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4시간

(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 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제이에스피브이 결산기 : 2014.12.31.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업종 : 태양광 모듈 제조업	【회사】 ① 매출 조기인식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('14년 641백만원, '15년 1,289백만원, '16년 1,253백만원, '17년 785백만원) - 회사는 매출 등을 제품인도시점 등 회계기준상 수익인식시점이 아닌 계약금 수령시점에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② 소송충당부채 누락 ('15년 665백만원) - 회사는 소송의 1심 패소에 따라 발생한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③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('17년 505백만원) - 회사는 토지재평가 등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	회 사 : - 과징금 40.3백만원 - 감사인지정 2년 (2019.1.1.~2020.12.31.) - 시정요구 - 개선권고 ※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제이에스피브이	**【감사인】** ①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'15년 1,289백만원, '16년 1,253백만원) - 감사인은 일부 거래에 대해 제품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하지 않는 등 매출 증빙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제품매출 등을 잘못된 시기에 인식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소송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'15년 665백만원) - 감사인은 소송내역의 완전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소송패소에 따른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**한길회계법인 :**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 - ㈜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**공인회계사 : 1인** - ㈜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상장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8시간 **공인회계사 : 1인** - ㈜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상장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제이에스피브이	**【감사인】** ①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'17년 185백만원) - 감사인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제품매출 등을 잘못된 시기에 인식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이연법인세 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7년 505백만원) -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이연법인세 부채를 누락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**동명회계법인 :**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 - ㈜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**공인회계사 : 1인** - ㈜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상장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8시간 **공인회계사 : 1인** - ㈜제이에스피브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상장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